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24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이정현 · 장종태 · 허성무
박홍배 · 강준현 · 김병주
김 현 · 손명수 · 정혜경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u> <u>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u> <u>하지 아니한다.</u></p> <p>1. <u>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u> <u>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u></p> <p>2. <u>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u> <u>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u> <u>인정되는 사람</u></p>	<p><삭 제></p>